#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6.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5.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 의원)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입장권등의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로 차등 처벌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br>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

| | |
|---|---|
| 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br>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신 설> | 제6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벌칙) ----------. |
| <신 설> |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

| | |
|---|---|
| |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
| 1.·2. (생 략)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의2(벌칙) ----------.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1.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제51조(몰수·추징) ① (생 략) |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 ②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제49조제1호 및 제49조의2제1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다만, 제49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5조(과태료) ① ----------. |
| <신 설> | 1.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 <신 설> | 2.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

| | |
|---|---|
| |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
| 1.·2. (생 략) |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경범죄 처벌법」[1]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2]

---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3] 등을 고려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로 차등 처벌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금지행위를 ⑴구매방해행위, ⑵타인의 공정 구매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구매행위, ⑶부정판매행위로 구분하고, 금지행위 판단기준가격을 현행 '구입가격'에서 '판매정가'로 수정함.

- 또한, 구매방해·부정구매행위 및 판매정가 5배 미만의 부정판매이득을 취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정가 5배 이상 50배 미만의 부정판매이득을 취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정가 50배 이상의 부정판매이득을 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3) 국민권익위원회 2024. 8. 26. 의결,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 구 분 | 조치사항 |
|---|---|
| 처벌범위 확대, 처벌수준 강화 | ○ (처벌범위 확대)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 영업으로 공연·경기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 금지 |
| | ○ (처벌수준 강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br>- ①암표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②형사처벌 수준 상향, ③법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 |
| 가격기준 명확화 | ○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br>- 가격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입장권 판매 정가'로 개선 |
| 신고체계 개선 | ○ 암표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 법적근거 정비 |

수 있도록 함.

- 그 외에도, 부정판매이득액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금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table>
<tr><th></th><th>현행법</th><th>개정안</th></tr>
<tr><td rowspan="2">금지<br>행위</td><td rowspan="2">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br>입장권등의 부정판매<br>(제6조의2②)</td><td>방법 무관<br>입장권등의 (1)구매방해·(2)부정구매·(3)부정판매<br>(제6조의2)</td></tr>
<tr><td>기준가 변경: ‘구입가격’→‘판매정가’<br>(제6조의2)</td></tr>
<tr><td>벌칙</td><td>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br>(제49조의2제1호)</td><td>금지행위별·판매부당이득별 차등 처벌<br>(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①제1·2호)
<table>
<tr><th>금지행위·판매부당이득</th><th>처벌</th></tr>
<tr><td>구매방해·부정구매<br>정가 5배 미만 판매이득</td><td>1,000만원<br>이하 과태료</td></tr>
<tr><td>5～50배 판매이득</td><td>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50배 이상 판매이득</td><td>3년 이하 징역/<br>3천만원 이하 벌금</td></tr>
</table></td></tr>
<tr><td rowspan="3">기타</td><td rowspan="3">-</td><td>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br>(제51조②)</td></tr>
<tr><td>징역·벌금 병과 제외<br>(제53조단서)</td></tr>
<tr><td>신고포상금<br>(제6조의3)</td></tr>
</table>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해 보임[4].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다량 구입하여

4)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정판매의 선행행위인 구매방해 및 부정구매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인간 소액 거래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면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보다 용이해지고 감시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포상 대상 |
|---|---|
| 「국민체육진흥법」 |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수수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을 신고·고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고발·검거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간행물 부당구입 등 유통질서를 해하는 저자·출판사 대표 등을 신고·고발 |

[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 법률 | 금지행위 | 처벌규정 |
|---|---|---|
| 경범죄 처벌법 |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판매 (제3조제2항제4호) |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
| 철도 사업법 |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
| 평창 올림픽법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제1항) |
| 공연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제1호) |
| 체육 시설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
| 국민체육 진흥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2024. 9. 27.)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금지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부정판매 목적의 구매를 통한 공정구매방해행위’(제2호)는 ‘공정구매방해행위’(제1호)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안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차등 처벌과 관련하여, 양형의 편차가 크지 않아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양형 결정으로 부정판매자간 형량을 차별화할 수 있고, 부정판매에 따른 이득액이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벌금·징역) 대비 개정안(과태료)에서의 형이 가벼워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문체부는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정하고, 금지행위(방해·구매·판매)간 유형 구분이 쉽지 않으며[5], 행위별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6].

○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5) (문체부 수정안)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 등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체부 수정안) 부당이득액 무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8. 기타 사항

없 음.